

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년 월 일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부금의 납부, 공제계약대출 원리금 상환, 공제금의 수령 등 공제계약상의 일체의 거래를 위하여 아래의 약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변경을 신청합니다.

○신청인

성명		서명 또는 날인	주민등록번호	
주소				

○신청구분(해당란에 √표시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
☐ 부금납부기일 변경	월납 매월 () 일	매월 () 일	
	분기납 * 26.7.1 이전 신청자에 한함 매분기 ()째달 ()일	매분기 ()째달 ()일	
☐ 부금월액 변경	1차	금 원	금 원
		변경 기산일 : 20 년 월부터 감액사유 :	
	2차 (선택)	금 원	금 원
		변경 기산일 : 20 년 월부터 감액사유 :	
☐ 계좌 변경	거래은행		
	계좌번호		
	※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iM뱅크, 부산, 산업, 수협, 신한, 씨티, 우리, 전북, SC제일, 제주, 하나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협 중 택일 ※ 계약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.(법인통장 사용불가)		

※ 부금월액 변경의 경우 변경 기산일의 부금납부기일 2일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에 관한 약정사항 -

- 위 계좌변경의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·공제계약대출금의 상환·공제금의 수령 등 공제계약상의 일체의 거래에 관한 계좌로 지정·신청합니다.
- 공제거래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금이 미납된 것으로 보며, 미납 해소를 위해 익일부터 일정기간 이체 처리합니다.
- 위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신청에 의하여 납부한 부금액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며 이체된 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